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
- 의안번호 : 제2840호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 안 이 유

-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,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6조)
- 나.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6조)
- 다.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8조의2 신설)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도 첨부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 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,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6조¹⁾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, 안 제6조와 같이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

세부적으로 안 제6조제4항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 통보하고 그 요지를 ‘고시’하도록 하고 있으나, 상위법인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‘시·도 생태·경관보전 지역 지정 및 변경²⁾’과 ‘자연휴식지의 지정³⁾’과 같이 법률상 시급성을 다투는 내용은 고시하되 이외의 것은 ‘통보’하는 것으로 완화⁴⁾하고 있는 바, 이를 준용하여 ‘고시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임.

-
- 1) 제6조(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)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, 시민·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- 2) 제24조(시·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) ③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도 생태·경관보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·면적·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3)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(자연휴식지의 지정)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1. 자연휴식지의 명칭·위치·면적 및 범위
 2.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·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
 3.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·위치
 4.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
 - 4) 제6조(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)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(시·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현행 제36조⁵⁾는 민간의 자연환경보전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‘보호 야생생물의 보호’와 ‘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’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, 민간의 자연환경보전활동 참여 확대 측면에서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⁶⁾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훼손된 생태계의 복원,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’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안 제36조제1항제4호의 ‘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·홍보’는 같은 항 제2호(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)의 활동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상위법 제57조⁷⁾제3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,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5) 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
2.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

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,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6) 제15조(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,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·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7) 제57조(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)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.

1.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·기구와의 협조와 교류
2.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
3.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